

성균관대학교 「成均館法學」 편집위원회 운영규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본 연구소가 간행하는 성균관법학의 편집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은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.

제2조의 1 (편집위원의 임기) ①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(1회에 한하여)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2002년도에 선임된 편집위원 중 5인의 임기는 3년 후에 종료된다.

② 전항 단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임기가 3년인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.

③ 편집위원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며, 충원 후에도 착수한 업무를 완결한다.

④ 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위원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. 해촉된 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, 또는 자의로 사임한 위원을 승계하기 위하여, 또는 자의로 사임한 위원을 승계하기 위하여,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.

제3조 (심사위원) ① 논문의 심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단을 두며 소장이 위촉하는 본교 전임교원 10인, 타교 전임교원 10인으로 구성한다.

②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위원단의 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는 3인의 위원이 하되 1인 이상의 타교 전임교원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4조 (심사절차)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연구논문 1편 당 3인의 관련분야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되,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.

②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게재가능, 수정게재, 수정재심, 게재불가로 구분, 판정하며 게재순서 등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

따른다.

- ③ 논문의 심사는 심사소견을 붙인 ‘可’ 또는 ‘否’로 하되 논문이 게재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3인중 2인 이상으로부터 ‘可’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.
- ④ 수정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의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게재한다.
- ⑤ 수정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 회송하여 게재가능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될 때까지 심사한다.
- ⑥ 심사위원은 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원고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,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⑧ 편집위원장은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연구소장 명의의 논문게재승인서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5조 (심사기준) 「성균관법학」에 게재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 심리하여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
- 1. 연구목적의 명료성
- 2. 개념적 / 이론적 적합성
- 3. 방법론의 타당성과 신뢰성
- 4. 논리적 구성
- 5. 관련논문의 취급(각주포함)
- 6. 결과의 심도 있는 토론
- 7. 연구의 독창성 / 학문적 기여 가능성
- 8. 논문제목과 내용의 일치여부

제6조 (심사료)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

제7조 (성균관법학 발간일자) 성균관법학은 매년 6월30일, 12월30일 연2회 발간한다.

< 부 칙 > 본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된다.

< 부 칙 > 본 규정은 2004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.



「成均館法學」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

비교법연구소가 간행하는 「成均館法學」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원고 작성과 투고요령에 따라 주십시오.

1. 투고자격

「成均館法學」의 투고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
- ② 성균관대학교 비교법 연구소 연구원
- ③ 전국의 법과대학교수, 판사, 검사, 변호사
- ④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
- ⑤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
- ⑥ 상기의 자격을 가진 자의 공동저술이 가능하며, 박사과정 또는 수료자의 경우 지도 교수를 제1저자로 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.

2. 게재조건

- ① 독창적인 학술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됩니다.
- ② 동일호에는 1인 1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공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3. 원고투고요령

- ① 원고는 <원고 작성 요령>에 따라 작성하여 3.5인치 디스켓(소속, 이름, 연락처 기재) 또는 E-Mail로 접수마감일까지 연구소장에게 우송하여 주십시오.
- ② <원고 작성 요령>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필자에게 반환됩니다.
- ③ 제출된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회는 그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, 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.

- ④ 「**成均館法學**」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비교법연구소가 이를 CD-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4. 원고작성요령

- ① 원고는 논문, 판례평석, 서평,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합니다.
- ②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, 논문제목(괄호 안에 영문제목 표기), 키워드, 성명(괄호 안에 영문 성명 표기), 소속, 직책, 학위, 주소, 전화번호(사무실, 자택)와 팩스번호를 적고, 논문 본문에는 저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.
- ③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합니다.(다만, 150매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출판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200매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)
- ④ 주석은 각주로 처리합니다.
- ⑤ 논문은 ‘아래한글’로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합니다.
- 가. 본문 : 왼쪽 여백 25, 오른 여백 25, 들여쓰기 5, 줄간격 170, 글꼴 바탕, 글자크기 10.5
- 나. 각주 : 왼쪽 여백 3, 오른 여백 0, 들여쓰기 -3, 줄간격 150, 글꼴 바탕, 글자크기 9
- ⑥ 직접 인용할 때에는 “ ”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‘ ’, 방점 또는 밑줄을 사용합니다.
- ⑦ 출전은 필자, 논문명, 서명, 판수, (출판사, 간행 년도) 인용면수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[예 : 김갑돌, “상법의 이념”, 「**成均館法學**」 제11호 (비교법연구소, 1999) 1쪽]
- 외국출전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.
- [예 : Joe A. Kim, “Corporate Governance”, 27 A.A.L.Rev. 103, 107~109 (1997)]
- ⑧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「 」로, 논문은 “ ”로 표시합니다.
- ⑨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,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. 또는 S. 로 인용면수를 표시합니다.

- ⑩ 국내판결은 선고 법원, 선고일, 판결 또는 결정,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[예 : 대법원 1995. 1. 1. 선고, 1994가1111 판결],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릅니다.
- ⑪ 외국 인명이나 지명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()안에 언어를 표시합니다. [예 : 화이트(James J. White)]
- ⑫ 공저자는 ‘/’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. [예 : 김갑돌/이을순/박명희]
- ⑬ 면수나 연도 등에서 ‘부터 까지’를 나타내는 부호로 ‘-’이 아닌 ‘~’를 사용합니다.
- ⑭ 영문 성명, 논문명,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합니다.
- ⑮ 일본어 논문명,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합니다.
- ⑯ 기념논문집은 「××× 기념논문집」 또는 「○○○-××× 기념논문집」으로 표기합니다.
- ⑰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‘참조’표시를 하지 않습니다.
- ⑱ 저자(필자)의 명칭은 본국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순서대로 표기합니다.



比較法研究所 운영위원회

- 연구소장 김형성(金炯盛)
- 운영위원 김영수(金榮秀), 성재호(成宰豪), 이광윤(李光潤),
이승우(李勝雨), 임웅(任雄), 임종률(林鍾律),
정규상(鄭圭相), 정호열(鄭浩烈), 최준선(崔竣璿)



比較法研究所 편집위원회

- 편집위원장 김백유(金白庾.한성대)
- 편집위원 고평석(高平錫.경남대), 김대정(金大貞.중앙대)
김천수(金天秀.성균관대), 박광민(朴光玟.성균관대)
이경렬(李京烈.숙명여대), 정재황(鄭在晃.성균관대)
최철영(崔哲榮.대구대), 허종렬(許宗烈.서울교대)



「成均館法學」 편집위원회

- 연락처 :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
- 전 화 : (02) 760-1288 Fax : (02) 760-1289
- Homepage : web.skku.edu/~icls
- E-mail : icls@skku.edu